

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판정서

신청인	성명						사 진 (3.5cm × 4.5cm)			
	생년월일									
	면허종류									
※ 신체검사 개별 검사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은 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4의2를 따른다.										
신장	체중	BMI	혈압(안정시, mmHg)		맥박(안정시)		알레르기			
cm	kg		수축기	이완기	회/분	[] 규칙 [] 불규칙				
시력		소변 검사								
구분	나안 (맨눈)	교정	요pH	요당	요단백	요잠혈	기타			
원거리	좌		색각 - (신규대상만 해당, 면허갱신시 비해당)				[] 통과(정상 색각) [] 미통과(색맹)			
	우		시야				[] 통과 [] 미통과			
근거리	좌		청력				[] 통과 [] 미통과			
	우		심전도(EKG)	[] 정상 EKG [] 비정상 EKG ()						
검사항목		적합	부적합	기타	검사항목		적합	부적합	기타	
가. 심혈관계					아. 악성종양(암)					
나. 호흡기계					자. 비뇨생식기계					
다. 위장관계					차. 피부/임파					
라. 내분비계					카. 눈					
마. 근골격계					타. 정신/심리					
바. 신경계					파. 청력					
사. 조혈계(혈액)					하. 약물					
주석: 검사소견 중 비정상 소견에 대해 상세 기술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.										
								년	월	일
검사자(면허번호/담당의사)					(서명 또는 인)					
판정 결과			판정 사유, 조건부적합 조건 등(필요시 소견서 별첨)							
[] 적합		[] 조건부적합								
[] 판단보류		[] 부적합								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 제11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〇〇병원(의원) 장 직인